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안 제2조, 제110조, 제110조제2항 등)

가. 개정 이유

○ 관세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관세조사의 정의가 납세자 권리 헌장(§110) 및 통합조사 원칙(§110의2)에 분산되어 있어 조문을 체계적 으로 정비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관세조사 정의규정을 정비하여 관세법 제2조 '정의' 조항에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체계 합리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안 제12조)

가. 개정 이유

- 납세자는 신고·제출한 자료 이외에 이를 증빙할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음에 따라, 정확한 관세부과가 곤란한 상황 발생
- 특히, 다국적기업은 자료를 해외본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자료보관 의무를 부여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신고·제출한 자료 대신 신고·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3.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안 제21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소송 등의 결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도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실질 화주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 발생

나. 개정 내용

○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사유에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불법행위에 대한 관세부과 실효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4.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 사유 추가 (안 제37조의4 제1항)

가. 개정 이유

○ 관세조사의 일반정의(관세법 제2조) 신설로 관세조사가 세액심사와 분리됨에 따라 조문 명확화 필요

나. 개정 내용

○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 사유에 기존 세액심사 외에 관세조사를 추가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조문 명확화로 불필요한 혼란 방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5.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가. 개정 이유

○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 및 국세기본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가산세 경감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납세자의 자발적 수정신고 유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6. 관세환급금의 환급규정 용어 정비(안 제46조 제1항)

가. 개정 이유

○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 정비

나. 개정 내용

○ '과오납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일반 국민의 법률용어 이해도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7.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사후 정산 합리화(안 제53조 제2항・3항)

가. 개정 이유

○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에 따른 사후 정산 제도 미비점 정비

나. 개정 내용

- 잠정덤핑방지관세 정산 사유에 잠정조치 유효기간의 종료를 추가
- 잠정덤핑방지관세의 정산 시 담보 관련 정산 내용을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제도 합리화 및 조문 명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8. 덤핑방지조치 재심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56조 제1항・3항・4항)
 - 가. 개정 이유
 - 덤핑방지조치 재심사 관련 규정 통일성 제고 및 위임근거 명확화

나. 개정 내용

- 덤핑방지조치 정의 조항 신설
- 재심사 기간 중 기존 덤핑방지조치의 효력 유지 관련 명시적 위임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 라. 입법효과
 - 조문 명확화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9.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안 제56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우회덤핑에 따른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훼손 차단

나. 개정 내용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 부과
-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제도 미적용
-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회피를 방지하여 국내산업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0. 상계관세 잠정조치 사후 정산 합리화(안 제59조 제2항)

가. 개정 이유

○ 상계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에 따른 사후 정산 제도 미비점 정비

나. 개정 내용

- 잠정상계관세 정산 사유에 잠정조치 유효기간의 종료를 추가
- 잠정상계관세의 정산 시 담보 관련 정산 내용을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제도 합리화 및 조문 명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11. 상계조치 재심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62조 제1항・3항・4항)
 - 가. 개정 이유
 - 상계조치 재심사 관련 규정 통일성 제고 및 위임근거 명확화
 - 나. 개정 내용
 - 상계조치 정의 조항 신설
 - 재심사 기간 중 기존 상계조치의 효력 유지 관련 명시적 위임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 라. 입법효과
 - 조문 명확화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2.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안 제83조 제1항·2항, 제108조 제2·3항)

가. 개정 이유

○ 용도세율 대상확대를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및 '용도세율 전용물품' 제도운용 현실 반영

나. 개정 내용

-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
-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제도 합리화 및 조문 명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3. 품목분류체계 수정에 관한 규정 합리적 정비(안 제84조)

가. 개정 이유

- 품목분류체계 수정대상에 품목분류표를 추가*하고, 수정 대상은 양허 관세규정등의 각 별표임을 명확히 함
 - *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나. 개정 내용

- 수정 사유 중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삭제하고 수정 사유를 대통령령 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
 - *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표를 수정하는 경우 등
-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이란 각 호의 표를 수정(품목의 삭제, 신설 및 재분류)하는 것임을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제도 합리화 및 조문 명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4.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약칭 변경(안 제85조 제2항 • 4항)

가. 개정 이유

○ 조문 명확화 차원에서 약칭 "분류위원회" 대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사용

나. 개정 내용

○ "분류위원회"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사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조문 명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15.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합리화 등(안 제86조 제1항・5항・9항)
 - 가. 개정 이유
 - 현행 법령상 미비점 보완 등 품목분류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나. 개정 내용

- 품목분류 변경의 소급적용 규정 등 삭제
-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없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 라. 입법효과
 - 제도 합리화 및 조문 명확화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6. 품목분류의 변경・재심사 제도 합리화 등(안 제87조 제2항・4항)

가. 개정 이유

○ 현행 법령상 미비점 보와 등 품목분류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나. 개정 내용

- 제86조와 통일성 유지를 위해 품목분류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고시' 대신 '고시 또는 공표'하도록 규정
- 현행 제86조제5항 삭제 내용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변경일), 적용시기의 예외(지연적용 및 소급적용) 관련 규정 신설
- 제84조에 따른 품목분류표 수정 및 관계법령 개정은 품목분류 변경과 무관하므로 소급적용 예외사유에서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제도 합리화 및 조문 명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7.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안 제111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관세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관세포탈죄보다 경미한 관세탈루에 대해 오히려 명백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
- 각종 조사 관련 법률에서도 재조사 허용사유로서 조세포탈이 아닌 조세탈루에 대해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규정 중*
 - * (국세기본법) <u>조세탈루</u>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나. 개정 내용

○ '관세포탈'이 아닌 '관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관세 중복조사를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합리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8.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안 제116조)

가. 개정 이유

○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및 과세정보 제공업무 대행자는 과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하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제재수단은 부재

나. 개정 내용

-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시 관세청이 시정요구 가능
- 시정요구 미이행시, 과세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과세정보 보호의 실효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9. 명단공개 대상 확대(안 제116조의2)

가. 개정 이유

- 수입물품 가격 저가신고 등 관세포탈 사례 및 관세포탈 금액이 증가 하는 추세
- 국세기본법은 고액(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조세포탈범의 인적 사항·포탈세액 등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은 고액· 상습 체납자만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 현행「관세법」에 의하면 관세 포탈액이 크지만 체납하지 않은 경우 위법성 정도가 높더라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나. 개정 내용

○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연간 2억워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0. 관세 심판청구 준용 규정 정비(안 제131조)

가. 개정 이유

○ 관세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일괄적으로 준용함에 따라, 관세법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결과 발생

나. 개정 내용

○ 관세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심사청구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아닌 관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체계 합리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1. 선상 견본품 반출 근거 마련(안 제161조 제1항·4항)

가. 개정 이유

○ 일부 수입물품은 성분분석 등을 위해 하선 전 견본품을 채취하고 반출 하는 검사가 불가피

나. 개정 내용

○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반출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선상 견본품 채취의 법적 근거 마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안 제164조 제5항)

가. 개정 이유

○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생략하는 절차를 기록·관리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삭제하고, 대신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생략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변경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기록 관리 의무에 대한 구속력 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3.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안 제165조)

가. 개정 이유

○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

나. 개정 내용

○ 미성년자 판단 기준시점을 등록 신청일로 명확화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미성년자의 직업선택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4.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안 §175)

가. 개정 이유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누락

나. 개정 내용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보세사 명의대여 금지의무 위반자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에서 배제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5.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안 제206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국세 및 지방세 강제징수(체납처분)가 위탁된 체납자의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나. 개정 내용

○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에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휴대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법적 정합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6. 관세사등 약칭 신설(안 제214조)

가. 개정 이유

○ "관세사등" 명칭 관련 통일성 제고

나. 개정 내용

- 제86조 제1항*에서 "관세사등" 약칭을 삭제함에 따라 본 조에서 인용 규정 신설
 - * "관세사등" 약칭을 "신청인"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조문 명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7. 보세운송수단 관련 의무 위반행위 규제(안 제216조, 제277조제5항)

가. 개정 이유

○ 보세운송 신고인이 운송기간 또는 운송통로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운송수단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근거 부재

나. 개정 내용

○ 운송수단 관련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보세운송 관련 의무이행 실효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8.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 (안 제222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나. 개정 내용

○ 환적화물,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에서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우송이 가능하도록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의 법적근거 마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9.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안 §224조)

가. 개정 이유

○ 행정제재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 처분인 행정제재에 대한 근거 마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30.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안 제246조의2 제2항)

가. 개정 이유

○ 물품검사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 필요

나. 개정 내용

○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에서 '포장용기 ·운반수단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이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마약 등 불법물품 적발 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31.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안 제247조 제3항)

가. 개정 이유

○ 세관공무원이 물품 검사 시 신고인이 납부하는 수수료인 검사 수수료가 수수료의 일반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가 필요

나. 개정 내용

○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법적 정합성 제고 및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3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안 제327조의2, 제327조의3)

가. 개정 이유

○ 노후화된 장비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는 현행 지정취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 불가

나. 개정 내용

○ 시스템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제재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